

4.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8-519호 1998. 11. 20

개 정 이 유

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개발이용 착수의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취득후 개발·이용 착수의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.

주택회보